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27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018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275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4,431,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2.경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C이 사내이사, C의 처 D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 발행주식 중 45%는 C이, 5%는 D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C 및 D가 각 2019. 11.경 원고의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C 및 D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주식 또한 D의 언니인 E와 그의 남편 F에게 모두 이전되었고, 현재는 E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D의 언니이자 E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지만, 2008.

1.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의 과장으로 등재되어 있어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530,471,600원, 퇴직연금 명목으로 63,960,030원 합계 594,431,63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실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동생인 D 및 그 배우자인 C과 통모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2008. 1.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534,473,250원을, 퇴직연금 명목으로 63,960,03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취득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98,433,280원(= 534,473,250원 + 63,960,03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또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증여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증여가 아니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급부한 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돈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게 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돈의 지급이 이루어졌던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임원이었던 C, D는 피고에게 해당 돈을 증여할 만한 인적관계에 있었다.

㉡ 원고는 상당기간 동안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및 집행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돈의 지급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를 형식적으로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돈을 송금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러한 합의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다.

㉔ 한편,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원고의 종전 대표자였던 C 및 그의 처 D가 이 사건 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살피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을 증여받은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고의 금전취득은 횡령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데,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임원이었던 C, D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언, 판사 이승민, 판사 손고은